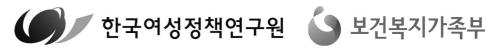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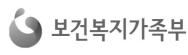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공청회

일시: 2009년 7월 1일 (수) 오후 2-4시

장소: 한국언론재단 19층 기자회견장





행사일정 ~

13:30-14:00	등	록			
14:00-14:10	사	회	황 7	정 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기획팀장
	인 사	말	김	채 현	한국여성정책연구 원장
			박 :	숙 자	보건복지가족부 가족정책관
14:10-14:40	사	회	장 천	폐 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주제빌	莊	입양	특례법	d 개정안의 발의에 대한 설명
			허님	남 순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4:40-15:20	토	론			
			김	경 복	동방사회복지회 사무총장
			박대	미 정	대원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박년	후 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 :	소 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15:20-16:00	종합토	론			
16:00	폐	회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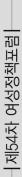
주제발표

토 론 문

김 영 복	동방사회복지회 사무총장	• 31
박 미 정	대원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 39
박 복 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43
박 소 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 47

입양특례법 개정안의 발의에 대한 설명

허 남 순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 서 론

1961년 처음으로 제정된 고아입양특례법은 1995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전문개정 되었고 2008년 3월 법률 제8852호까지 9차례 개정되었다. 입양촉진 및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그만큼 입양대상 아동이나 입양가정의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지속적으로 변화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국 내입양의 양부모 요건을 완화하고 경제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이로 인해 '07년 이후 국내입양이 국외입양을 앞서는 등 국내입양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아직도 법체계상 입양 사전·사후 입양아동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위한 수단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또한 여전히 높은 국외입양 비율(49%, '08)을 통해알 수 있듯이(보건복지부, 2008) 법적 근거 미비와 제도적 장치의 부족 등으로 국내입양우선추진제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아동권익을 보호하기위하여 헤이그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적인 협조를 담당할 정부 기구도 지정하거나 창설할 필요가 있으며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방향으로 입양법과 제도가 개선되도록 노력해야할 것이고 헤이그협약 비준 등 법적 제도적 준비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입양은 친생부모가 직접 양육할 수 없는 아동의 보호와 양육을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입양법과 제도는 국내입양이든 국외입양이든 입양되는 모든 아동을 보호하고 입양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본 발표에서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고자 한다. 우선 입양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기위해 양부모의 아동학대나 범죄경력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입양동의가 필요한 아동의 연령을 낮추며, 친가족 찾기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야 한다. 아울러 중앙입양지원기관을 설치하여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국내입양 우선추진제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입양아동 사후관리서비스 지원업무를 담당토록 하는 제도 설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발표는 헤이그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입양법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나라아동특례법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제시하려고 한다.

2. 입양특례법의 현황과 문제점

1) 입양의 절차적 요건

(1) 입양가정조사서 및 입양부모 자격조건

가. 협약의 내용

협약에 의하면, 입양은 양친이 되고자 하는 자가 자기의 일상거소가 있는 중앙국가기 관에 입양을 신청함으로써 시작된다. 입양 신청을 받은 수령국의 중앙국가기관 또는 국제입양기관은 입양대상가정에 대한 가정조사서, 입양자격, 사회적 환경, 입양이유, 국제입양능력 등에 대한 조사서, 종합소득 신고서, 경찰의 신원조사서(범죄기록 및 아동학대 기록 조사) 등을 조사하고 입양부모를 상담하여 양친이 될 자가 입양을 할 자격이 있으며 입양에 적합하다고 결정하여야 한다.

나. 한국의 국제입양관련 법 내용

한국은 한국아동을 입양하기 원하는 입양부모들에 대한 자격 규정을 두고 있으며 그 조건에 적합한 경우만 입양부모로서 승인하고 있다. 특례법 제5조에 양친될 자격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 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시행규칙 제2조에서는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령차이가 60세 미만일 것을 요구하는데, 다만 양친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이어야 한다.

다. 문제점 및 논의

① 특례법은 국내입양의 경우 양친의 자격요건만 열거하고 있을 뿐이며, 양친이 될 자의 가정조사를 하도록 명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입양기관에서는 가정조사를 하고 있지만 일정한 기준이 없으므로 입양기관에 따라 가정조사를 하는 내용이 다르다. 또한 가정조사서에는 양부모의 범죄기록, 아동학대, 성적학대 등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조사하여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지 않다. 외국에서 입양을 하는 양부모의 경우는 그 나라의 입양기관에서 학대나 범죄 등에 대한 조회를 하지만 한국입양부모들을 대상으로는

4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공청회

이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

사회적으로 아동학대 및 성적학대 폭력 등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입양될 부모들의 자격요건으로 이런 범죄 경력이 없는가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나 현재는 이것을 조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마련되어있지 않으며 체계도 갖추어져 있지 않다. 따라 서 양친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② 현재의 아동특례법에 의하면 외국국적을 가진 해외동포가 입양을 하는 경우 외국인과 동일한 자격조건을 요구하고 있다. 재외동포가 한국아동을 입양하는 경우 국내입양부모와 유사한 조건과 자격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제협약은 국적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입양부모와 아동이 거주하는 거소가 다른 국가인가를 기준으로 국제입양을 결정한다. 향후 거소를 중심으로 규정하는 협약을 비준할 경우는 물론 협약을 비준하기 이전이라도 재외교포가 한국아동을 입양할 경우에는 국내입양과 동일하게취급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부모 중 일방만이 재외교포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국내법상 양부모와 양자될 자의 연령 차이를 60세까지 허용하는 것은 재외교포의 경우에는 연령 차이를 50세 정도로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에 가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정착하느라고 보낸 시간들을 감안해서 외국인 부모들 보다는 5년 정도를 더 고려해서 50세로 하는 것이 적합할 것이다. 그러나 외국과 국내 입양의 여건상 국내 입양 부모보다는 10년 정도의 차이를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2) 입양 대상아동의 요건 및 동의 절차

(1) 입양대상 아동의 요건

가. 협약의 내용

출신국 국가기관에 대한 요건 중 중요한 사항은 아동이 유기, 납치, 매매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국제입양 되는 것을 막는 제도의 보장이다. 불법입양을 제지하는 방법으로 협약은 출신국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하도록 요구한다. 출신국의 권한 있는 국가기관은 1)아동이 입양자격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며, 2)입양에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그 동의권자의 동의를 확보하여야 하며, 입양에 필요한 동의권자의 동의에

있어서는, 그 동의가 필요한 개인, 단체, 기관 등은 필요한 상담을 받았고, 동의의 효과 특히 입양의 결과 아동과 생가간의 법적관계가 종료되는지 여부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받았다는 것, 그러한 동의가 적법한 방식에 따라 자유로운 의사로 서면으로 표시되거나 입증되었으며, 동의가 어떠한 종류의 금전지급이나 대가에 기인한 것이 아니고 또 철회 되지도 않았으며, 母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가 아동의 출생 후에 이루어졌 다는 사실이 확보되어야 한다.

나. 한국의 국제입양관련 법 내용

특례법 4조에 의하면, 양자될 자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서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지방자치 단체장이 부양 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한자 2)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장 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의뢰한자 3)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로서 지방자치 단체장이 보장시설에 의뢰한자 4)기타 부양 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장이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한 자이다. 따라서 입양이 가능한 아동은 1)부양 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아동으로 보장시설에 있는 아동이거나 2)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장시설이나 입양기관에 있는 아동 3)부모가 있지만 법원으로부터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아동이 입양 가능한 아동으로 구분될 수 있다.

① 부양 의무자를 알 수 없는 아동에 대한 조치

'특례법' 4조 1항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부양 의무자를 확인 할 수 없는 아동의 경우나 4항의 부양 의무자를 알 수 없어서 보장시설에 의뢰된 아동에 대해서는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이하 '후견인법') 제3조에 의하여 후견인 지정을 먼저 받아야 한다. 후견인법 제 3조의 규정에 의한후견인 지정을 받기 위하여 보호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부양의무자 확인의 공고를 의뢰하여야한다.1) 다만, 다른 보호시설의 장이 확인 공고를 의뢰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법 제4조 제2항에서는 부양의무자 확인의 공고를 의뢰받은 시장·

6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공청회

¹⁾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호적이 없는 미혼모의 무적아나 기아인 경우는 가정법원의 허락을 받아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고 입양기관이나 아동이 있는 보장시설의 관할 구청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게 된다.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대상아동으로 선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입양기관이 소재 한관할 구청에 후견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후견인 지정을 받게 된다. 입양기관장은 후견인 지정을 받은 후 아동이 입양대상 아동으로서 별 문제가 없다는 입양대상 확인서를 관할 구청에서 발급받는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입양대상아동으로 선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게 된다.

보호자를 알지 못하는 아동에 대한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는 미아나 실종아동의 보호자를 찾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사실상 형식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2005년 12월부터 시행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실종아동보호법')은 실종아동이나미아가 국내나 국제 입양되는 것을 예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실종아동보호법에 의하면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개인 또는 시설장은 경찰관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고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찰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되어 있다.²⁾ 보건복지가족부는 실종아동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사회복지 법인 등에 그 업무의 전부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³⁾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의 자료를 받아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⁴⁾ 실종아동 등을 발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는 아동을 조속히 부모에게 귀가시키는 것은 물론 실종아동이 잘못하여 국내나 해외로 입양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실종아동보호법에는 등록된 아동들에 대한 입양은 논의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특례법에는 미아와 친권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입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기아는 해외이주허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⁵⁾

²⁾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³⁾ 동법 제5조 제1항.

⁴⁾ 동법 제8조.

⁵⁾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3항 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② 동의권자의 동의확보

특례법 제6조 제1항(입양의 동의)에 의하면 특례법 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4조2호에 해당하는 자 즉 부모(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한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 의뢰시의 입양동의로써 입양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례법 제6조 제2항에는 15세 이상인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동의 외에 양자로 될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의 동의는 서면에 의하되, 동의에 필요한 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다. 문제점 및 논의

- ①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 법에는 실종아동으로 등록된 아동을 입양대상 아동으로 선정하는 기준은 없다. 단 특례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명시된 보호가 필요한 아동으로서 보호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입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 기아는 해외이주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을 뿐이다. 부모를 알 수 없는 아동은 모두 실종아동으로 등록되어야 하므로 실종아동으로 등록된 아동은 미아나 유아뿐 아니라 기아인 경우도 많이 있을 것이다. 아동의 발견 당시 연령이나 발견정황에 따라 실종아동으로 등록된 아동을 입양아동으로 어떻게 선정해야 할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 ② 특례법상 입양의 동의는 특례법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부모 또는 후견인의 입양을 동의하여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한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 의뢰시의입양동의로써 입양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 그러나 친양자로 입양할 경우 법원이 친생부모의 친양자 입양동의를 확인하여야 되는데, 문제는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 시 친부모가 입양동의서를 이미 제출하였더라도 법원은 친부모가 다시 직접 법원에 출두하여 입양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취하고 있는데, 법원의 친양자 입양 심사 시이미 동의서를 제출한 동의권자가 소재불명이어서 입양의사를 재확인할 수 없는 예외적

인 경우에는 보호시설 또는 입양기관의 장이 이를 소명하게 되면, 법원이 친생부모의 출두에 의한 확인 없이 직권으로 이미 제출한 입양동의서로 입양의사를 확인한 것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는 법원이 친부모에게 몇 번의 출두요구서를 보내도 연락이 없는 경우에 행방불명으로 처리하여 친양자 입적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 칠 경우 아동을 친양자로 입적하는데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입양부모가 친양자 입양 제도를 기피하는 요소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통합법⁶⁾ 에서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은 아동·청소년을 유기하거나 의식 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동법 제9조 제6 호)를 하는 경우, 동법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 12조 제1항). 아동보호전담기관의 장은 자치단체장에게 친권상 실 선고를 청구하도록 요청하고 그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동법 제12조 제2항). 이 경우 법원이 친권상실을 선고할 때 직권 또는 자치단체장 또는 아동청소년 운영기관장 또는 아동보호전담기관 장과 해당 아동청소년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 다(동법 제17조 제2항). 향후 준비 중인 내용대로 입법화된다면, 보장시설 및 보호시설 의 장은 이러한 친권상실 및 후견인 선임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후견인으로서 친부모에 갈음하여 입양에 동의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친권이 상실된 부모는 그 소재를 알 수 있더라도 입양여부를 결정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법은 친양자 입양의 경우에는 부모가 친권이 상실되면 친생부모의 입양동의가 필요 없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 입양에 있어서는 부모의 친권상실을 입양동의가 필요없는 사 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 입양 시 친권상실이 바로 입양동의권 상실로 볼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입양특례법에서는 법원으로부터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로서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된 아동은 후견인의 입양동의로써 부모의 입양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입양동의 절차를 간소화 할 필요가 있다.

③ 협약은 미혼모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가 아동의 출생 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제시하는데 한국은 부모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만 되어 있지 언제 받아야 되는가는 법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스웨덴, 미국 등 많은 나라들이 모친의 동의는 출산으로부터 충분히 회복된 후에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입양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부모의 입양동의는 아동의 출산 후 72시간 정도 지난 후에 이루어

⁶⁾ 아동복지청소년 통합법 전부개정법률안, 2008. 10. 27 입법예고, 보건복지가족부 공고 제2008-406호.

져야하고 입양동의 후 30일이 경과한 후 입양 알선을 시작하도록 하여야한다.

④ 한국은 입양아동의 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 양자로 될 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아동의 발달이 빨라진 현대사회에서 선진국의 입법례를 보아도 만15세 이상의 연령은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되므로, 13세로 하향조정하여 입양 시 본인의 의사가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는 입양이 아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입양 당사자인 아동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려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특례법에 이런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중앙국가기관과 인가된 단체

(1) 중앙국가기관의 역할 및 지정

가. 협약의 내용 - 중앙국가 기관 지정 및 역할규정

협약은 모든 체약국은 이 협약에서 부과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의 중앙국가 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7) 중앙국가기관은 정부기관으로서 국내에 있는 다른 국가기관들이나 민간입양기관들 간에 협력을 증진시켜야 하며 입양관련 국내법에 관한 정보 및 통계와 표준 서식과 같은 정보를 다른 입양기관들에게 제공하고 가능한 협약의 적용상의 장애를 제거 하여야 한다. 8) 중앙국가기관에는 국제입양을 담당할 전문적인 인력을 충분히 배치하여야 하며 헤이그 국제사법회의 사무국에 의사소통을 책임질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직원의 이름, 메일 주소, 팩스 번호들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국가기관은 입양절차와 관련한 아동 및 양부모에 관한 보고서 작성, 수령, 송부 등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양절차와 관련한 중앙국가기관의 역할 은 중앙국가가관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공적기관 또는 인가받은 단체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⁹⁾ 중앙국가기관은 민간 입양기관이 국제입양을 하도록 인가할 수 있으며 입양가정 조사서, 아동조사서, 사후관리, 입양홍보 등의 역할을 민간 입양기관이 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협약은 당해 국가 내에서의 입양을 하기 위한 절차를 용이하게 그리고

⁷⁾ 협약 제 6조 제1항.

⁸⁾ 협약 제7조 제2항.

⁹⁾ 협약 제22조 제1항.

¹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공청회

신속하게 하는 것, 입양상담 및 입양 후 서비스 발전의 촉진, 국제입양의 경험에 관한 일반적인 평가보고서의 상호제공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책임은 중앙국가기관 또는 공적기관이나 인가받은 단체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도록 하고 있다.

나. 한국의 국제입양관련 법 내용

한국은 보건복지가족부가 국가중앙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제입양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¹⁰⁾ 다른 나라의 입양기관과입양에 대한 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때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¹¹⁾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입양기관을 지도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다. 문제점 및 논의

보건복지가족부는 한국 입양기관을 허가하고 감독하기는 하지만 협약에서 요구하는 중앙국가기관의 역할을 하려면 그 기능과 역할이 확대되어야 한다. 다른 나라의 중앙국가기관과 의사소통을 하고, 국제입양에서 발생하는 장애를 제거하며, 입양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제입양 통계를 교환하는 등의 업무를 하려면 국외입양을 전담할 전문 인력과 조직을 더 보완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제입양 절차와 관련된 기능은 현실적으로 국가기관이 직접 수행하기 보다는 공적기관이 이를 수행하는 것이 업무의 성격상더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국제입양 업무의 전문성과 윤리적 성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산하기관으로서 단독법인을 공적기관으로 설치하고, 중앙국가기관의 기능 중 절차적이고 실무적인 기능은 그 법인에서 전문인력과 조직을 확보하도록 하여 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제입양업무를 담당하는 공적기관은 국제입양된 입양인을 위한 사후관리와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 외에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 국내입양을 위해 입양기관간의 조정 및 사후관리 사업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¹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단서.

¹¹⁾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4항.

4) 아동의 사후관리

가. 협약의 내용

협약은 중앙국가기관은 직접 또는 공적기관이나 당해 국가에서 적법하게 인가된 단체를 통해 입양 후 서비스의 발전을 촉진하도록 하며¹²⁾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아동의출생에 관한 정보, 특히 그 부모의 신원에 관한 정보와 병력에 관한 정보를 보존하도록하고 있고 그 나라의 법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지침에 따라 아동 또는 그 대리인이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¹³⁾

나. 아동의 사후관리 서비스 및 출생에 대한 정보 접근 권

특례법 12조 5항에 입양기관의 장은 국외 입양되는 자의 사후관리는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 할 때까지로 하며 특례법 12조 6항에는 국외로 입양된 자를 위하여 입양된 자가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 한 후에도 모국방문사업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사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특례법 시행규칙 13조에는 입양기관은 사후관리를 위하여 입양아동 및 양친된 자에 관한 입양관계서류를 영구적으로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입양의 경우에 입양기관은 입양성립 후 6개월까지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문제점 및 논의

한국의 특례법은 국제입양 된 아동들의 사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비교적 자세하게 사후관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사후관리는 국제 입양된 아동 뿐 아니라 국내 입양된 아동의 경우에도 앞으로 더욱 심각하게 고려할 문제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한국의 특례법이나 시행령 등에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

① 아동이 생부모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자신의 출생에 관한 정보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 18세 이후에는 단독으로 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생부모가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

12_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공청회

¹²⁾ 협약 제9조 c).

¹³⁾ 협약 제30조.

만 공개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아동이 18세 이전이라도 생부모가 정보공개에 동의하고 입양부모가 동의하고 아동과 함께 입양기관에 친부모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입양기관은 친부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입양기관들이 없어지거나 다른 기관으로 전환할 때를 가정하여 입양기관이 문을 닫거나 입양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 입양아동과 생부모에 대한 모든 기록과 정보는 중앙 국가기관에 이전한다는 규정이 필요하다. 실제로 과거에 활동하던 국제입양기관들이 문을 닫으면서 많은 입양인들이 자신들에 대한 정보를 찾지 못하여 고생하는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

③ 아동의 입양이 허가된 경우에는 기본적인 인적사항과 입양 여부에 관한 정보를 중앙국가기관에 데이터 베이스화 하도록 등록하는 체계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에는 국제입양의 경우, 협약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국제입양에 대한 등록 제도를 설치할 것을 중앙국가기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등록제도는 국제입양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1)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정책

가. 협약의 내용

협약은 각국의 아동이 그의 생가의 보호아래 있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최우선으로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협약 제4조는 출신국내에서의 아동의 위탁가능성에 대해 적절히 고려한 후에 국제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결정 한 경우에만 국제입양을 하도록 권하고 있다. UN의 아동권리협약¹⁴⁾ 제21조도 국제입양을 보내기 전 출신국은 자국 내에서 아동을 입양 보내거나 가정위탁하기 위한다양한 정책을 세우는 노력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¹⁴⁾ 우리나라는 1991년 동 협약을 비준하여 1991년 12월 20일에 발효되었다. 다만, 우리나라는 협약 비준 시 입양과 관련하여 관계당국에 의한 입양허가제를 규정하고 있는 협약 제21조 가항에 대해서는 유보하였다.

나. 한국의 국제입양관련 법 내용

한국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을 예방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자국 내에서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취하고 있다.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해 국내입양기관에 예 산을 지원하고,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부모에게 양육비와 의료비를 보조하며,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내입양을 한 모든 아동에게 의료보호나 등록금을 제공 하며, 국내입양의 경우 입양부모의 연령이나 자격조건도 국제입양에 비하여 융통성 있 게 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만들고 위탁가정에 다양한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서 빈곤, 학대 등으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적으로 분리된 아동들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 또한 모자복지법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미혼모, 편부, 편모가 아동양육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 주택지원, 가사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다. 문제점 및 논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국내에서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는 만들어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나 전달체계가 미흡한 경우가 많다. 보호가필요한 아동을 한국 내에서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는 만들어져 있지만 이 제도들의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국내입양기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있으나 실제로 국내입양 기관의 수가 너무 적고 입양기관도 국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다.
- ② 입양이 가능한 모든 입양 대상아동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체계적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 입양기관 간에도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고 있다.
- ③ 현재의 아동복지 체계에서는 입양기관과 아동보호시설 간에 거의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보장시설이나 보호시설에 입소된 아동을 입양기관이 선정해서 입양대상아동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승인받는 것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아동이 처음 발견되거나 의뢰되어 어떤 기관에 위탁되었는가에 따라 입양을 갈 수도 있고 전혀

14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공청회

갈 수 없기도 하다. 따라서 입양대상이동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제도가 바뀌어야만 아동이 보호받고 있는 기관과 관계없이 아동의 상태에 따라 입양 여부가 결정 될 수 있다.

3. 입양특별법 개정을 위한 주요내용

위에서 헤이그 협약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현재의 입양특별법이나 민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지만 본 발표에서는 아동복지법이나 민법의 개정 없이도 현재의 입양특별법을 개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내용을 국한하여 논의하려고 한다. 입양특별법의 내용 중 개정되어야 할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청소년들과 성인을 구분하는 연령을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아동·청소년 통합법과 일치하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안 제2조제2호 개정)

현재 18세로 되어 있는 연령의 제한을 19세로 정한다.

- 나. 양친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 요건을 강화 한다(안 제5조제1항제5호, 제5조제3항 신설)
 - 1) 양친될 자의 요건으로 아동학대, 폭력 등 범죄경력이 없어야 할 것을 추가한다.
 - 2) 입양가정의 가정상황을 조사하는 입양기관은 이를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해외동포가 입양하고자 하는 경우 가능한대로 국내입양 절차와 같게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부모와 아동의 연령차를 50세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입양동의 절차의 간소화(안 제6조제1항)

1) 법원으로부터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로서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된 아 동은 후견인의 입양동의로써 부모의 입양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입양동 의 절차를 간소화 한다.

라. 아동본인 입양동의 연령 조정 및 입양 숙려제를 도입한다(안 제6조제2항, 제6조제 4항 신설)

- 1) 아동본인의 입양동의 연령을 15세에서 13세로 하향 조정하여 입양 시 본인의 의사가 확대 반영될 수 있게 한다.
- 2) 입양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부모의 입양동의는 아동의 출산 후 적어도 72시간 이 지난 후 이루어져야 하고, 입양동의 후 30일이 경과한 후 입양 알선을 시작하여야 한다.

마. 중앙입양정보원을 설립한다(안 제10조 신설)

요보호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사후관리 사업 등을 수행하는 중앙입양정보원을 설립하고 국가가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바. 국내입양의 우선추진 및 중앙입양지원과 입양기관 간 협력의무를 명시하여야 한다 (안 제12조제2항·제3항·제5항 신설)

- 1) 입양기관은 국내입양을 위한 노력을 우선하고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 내입양이 어려울 경우 국외입양을 추진하도록 하며, 국내입양이 어려울 경우 국 외입양 이전에 국가가 국내입양을 위해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2) 입양기관의 장은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입양아동과 가족에 대한 정보를 중앙입양정보원에 제공하도록 한다.
- 3) 입양배경에 대한 정보가 미비하여 뿌리찾기의 어려움을 겪는 입양인, 친가족, 입양부모의 정보를 DB화 한다.

사. 제외교포에 의한 입양에 대한 특례(안 제20조 10항 신설)를 신설한다

재외교포 중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한국국적을 보유하다가 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외국인이 된 자가 국내 아동을 입양하는 경우에는 한국 혈통과 문화를 고려하여 국내입양과 자격요건을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한다. 단 양부모 될 자와 아동의 연령 차이는 50세 미만이어야 한다.

아.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안 제22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법에 의한 입양절차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과 입양

16_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공청회

인에게 기존에 제공하던 사회복지서비스에 덧붙여 친가족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정부는 친가족 찾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관련기관에 할 수 있도록 한다.

자. 입양아동의 출생정보 접근권 도입(안 제22조의 2 신설)

친생부모의 사생활 유지 권리를 고려하여 친생부모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 만18세 이후 입양아동이 본인 친생부모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차. 양육수당 등 지급 범위의 확대(안 제23조)

이 법에 의한 입양절차에 따라 장애아동을 입양한 입양가정에 대해서 양육수당, 의료비,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내용을 분명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새로운 입양특별법의 각 조문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법률 제 호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18세"를 "19세"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아동에 대한 학대 및 폭력 등의 범죄경력이 없을 것
- ③ 가정상황에 관한 조사기관은 제1항 제5호의 요건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 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중 "15세"를 "13세"로 하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의뢰 시의 입양동의 로써 입양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고,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이 정한 후견인의 동의로 갈음한다.

④ 부모의 입양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의 출산 후 72시간이 지난 후 동의를 얻어야 하고, 입양성립은 부모의 동의 후 30일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제10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공청회

제10조 (중앙입양정보원의 설립) ① 요보호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 후 가정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입양정보원(이하 "정보 위"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1. 입양아동 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관한 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 2. 입양대상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조정
- 3. 국내·외 입양 민원 조정 및 종합상담
- 4. 입양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및 교육
- 5. 국내 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 조사 연구
- 6. 입양 관련 프로그램의 조정 및 평가
- 7. 입양 관련 국제협력 업무
- 8. 기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 ② 정보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정보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④ 정보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보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 ⑥ 정보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제1항 중 "충분한 입양상담"을 "양육과 입양에 관한 충분한 상담"으로 하고, "제 2항"을 "제4항"으로 "제3항"을 "제7항"으로 하며, 제4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제4항 내지 제6항"을 "제8항 내지 제10항"으로 하며, 제7항(종전의 제3항)중 "입양기관"을 "정보원 및 입양기관"으로 하고, 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

- ④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알선을 행함에 있어 그 양친이 될 자에 대하여 제5조제1항 각호의 사실을 조사하여 가정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사보고서는 양친 이 될 자의 제5조제1항제5호의 범죄기록 및 아동학대 여부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 ②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 의뢰된 아동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서 입양가능한 부모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기간내에 국내에서 입양가능한 부모를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

하여 국외입양을 하도록 한다.

- ③ 제2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입양이 되지 않을 경우 국가는 아동의 이익을 위하여 당해 아동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으며, 입양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⑤ 입양기관의 장은 정보원의 입양인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입양아동과 가족에 관한 정보를 정보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범위 및 내용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입양될 자를 인수한 때에는"을 "양부모가 입양될 자를 인수한 때까지"로 한다.

제20조 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 10 (재외교포에 의한 입양에 대한 특례)

- ① 외국의 시민권을 가진 한국인이 입양을 하는 경우 양친이 될 자의 입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국내입양과 동일한 자격요건 하에서 입양을 할 수 있다.
- ② 제 1항은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는 경우 양친이 될 자 일방만이 제 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사회복지서비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법에 의한 입양절차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과 입양아동에게 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개인정보의 열람 등 친가족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입양아동의 출생정보 접근권) ① 입양아동은 만18세 이후 정보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친생부모에 관한 정보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양기관은 입양인이 신청한 정보를 열람 또는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양 당시 친생부모 중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의사표

20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공청회

시를 한 경우 또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자의 정보 중 의료적 필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입양아동이 만18세 미만인 경우에도 친생부모가 정보공개에 동의하였고, 양부모와 아동이 공동으로 정보원 또는 입양기관에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친생부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의 범위 및 내용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 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중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를 "이법에 의한 입양절차에 따라"로 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관계기관의 협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인의 친부모 찾기 등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제2항 중 "제12조제3항"을 "제12조제6항"으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양아동의 조정을 거부한 자
- 2. 제12조제5항에 따른 입양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
- 3. 제22조제2항·제3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
- ② 제1항에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

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양특례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정의) (생 략)	제2조 (정의) (현행과 같음)
1. "아동"이라 함은 <u>18세</u> 미만의 자를 말한다.	1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5조 (양친될 자격등) ① 생략	제5조 (양친될 자격등) ①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아동에 대한 학대 및 폭력 등의 범죄경력이 없을 것
<u>5.</u> (생 략)	<u>6.</u>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가정상황에 관한 조사기관은 제1항제5호의 요건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입양의 동의) ①제4조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직계존속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나 다른 직계존속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의뢰시의 입양동의로써 입양의 동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 (입양의 동의) ①
② <u>15세</u> 이상인 자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양동의외에 양자로 될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u>13</u> 4]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부모의 입양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

현 행	개 정 안
	의 출산 후 72시간이 지난 후 동의를 얻어야 하고, 입양성립은 부모의 동의 후 30일이 경 과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④ (생 략)	<u>⑤</u>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0조 (중앙입양정보원의 설립) ①요보호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 후 가정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입양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1. 입양아동·가족정보 및 친가족 찾기에 관한통합데이터베이스 운영 2. 입양대상아동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계·조정 3. 국내·외 입양 민원 조정 및 종합상담4. 입양활성화를 위한 대국민홍보 및 교육5. 국내·외 입양정책 및 서비스에 관한조사·연구6. 입양관련 프로그램의 조정 및 평가7. 입양관련 국제협력업무8. 기타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위탁반은 사업2 정보원은 법인으로한다. 3 정보원은 그주된 사무소의소재지에설립등기를함으로써성립한다. 4 정보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바에따라임원과 필요한 경원을 둔다. 5 정부는예산의 범위에서 정보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출연할수 있다. 6 정보원에 관하여는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제외하고는「민법」중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u>제10조</u> (생 략)	<u>제11조</u> (현행과 같음)
제12조 (입양기관의 의무) ①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의뢰된 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모에게 <u>충분한</u> 입양상담을 제공하며, 부모를 알 수 없는 경 우에는 우선 부모 등 직계존속을 찾는 노력 을 다하여야 한다.	제12조 (입양기관의 의무) ①
	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 행 개 정 안 국내에서 입양가능한 부모를 찾기 위한 노 력을 하여야 하며,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 고 적절한 기간내에 국내에서 입양가능한 부모를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국외 입양을 하도록 한다. <신 설> ③ 제2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입양이 되 지 않을 경우 국가는 아동의 이익을 위하여 당해 아동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 으며, 입양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알선을 행함에 있어 ④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알선을 행함에 있어 그 양친이 될 자에 대하여 제5조제1항 각호 그 양친이 될 자에 대하여 제5조제1항 각호 의 사실을 조사하여야 한다. 의 사실을 조사하여 가정조사보고서를 작 성하여야 하고, 조사보고서는 양친이 될 자 의 제5조제1항제5호의 범죄기록 및 아동학 대 여부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다. <신 설> ⑤ 입양기관의 장은 정보원의 입양인 통합데 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입양아동과 가 족에 관한 DB정보를 정보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신 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범위 및 내용 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③ 입양기관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⑦ 정보원 및 입양기관----자는 그 업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 ⑥ (생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13조 (입양기관의 장의 후견직무) 입양기관 제13조 (입양기관의 의무) ①---의 장은 입양을 알선하기 위하여 보장시설 의 장, 부모, 다른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으 로부터 입양될 자를 인수한 때에는 그 인수 -----양부모가 입양될 자를 인 한 날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가지 후견인으 수한 때까지-----로서의 직무를 행한다. 제22조 (사회복지서비스) 국가 및 지방자치단 제22조(사회복지서비스) <u>국가 및 지방자치단체</u> 체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아동을 입양 는 이법에 의한 입양절차에 따라 아동을 입 한 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 양한 가정과 입양아동에게 아동의 건전한 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의 이용등의 양육에 필요한 상담, 개인정보의 열람 등 친

현 행	개 정 안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가족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의 사회복지서 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u><신 설></u>	제22조의2(입양아동의 출생정보 접근권) ① 입 양아동은 만19세 이후 정보원 또는 입양기 관이 보유하고 있는 친생부모에 관한 정 보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u><신 설></u>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양기관은 입양인이 신청한 정보를 열람 또는 등본을 교부하여 야 한다. 다만, 입양 당시 친생부모 중 정보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 또는 정보공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 지 않은 자의 정보는 의료적 필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에 대한 내용을 공 개 할 수 있다.
<u><신 설></u>	③입양아동이 만19세 미만인 경우에도 친생부 모가 정보공개에 동의하였고, 양부모와 아 동이 공동으로 정보원 또는 입양기관에 정 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친생부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u><신 설></u>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의 범위 및 내용에 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령 으로 정한다.
제23조(양육보조금등의 지급) ①국가 및 지방 자치단체는 <u>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u> 입양된 장애아동등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 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 위안에서 양육수당·의료비 그 밖의 필요한 양육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③ (생 략)	제23조(양육보조금등의 지급) ① 이 법에 의한 입양절차에 따라 -
<u><신 설></u>	제23조의2(관계기관의 협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입양인의 친부모 찾기 등의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 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벌칙) ① (생 략)	제27조(양육보조금등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②-----<u>제</u>12조제6항-②제10조제2항 또는 <u>제12조제3항</u>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2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양아동의 조정을 거 부한 자 2. 제12조제5항에 따른 입양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 3. 제22조제2항·제3항에 따른 정보의 열람 또 는 등본의 교부 등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자 ②제1항에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 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 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 료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9조(양벌규정) (현행과 같음)

제28조(양벌규정) (생략)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개정안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내용
제2조 (기타 양친될 자의 자격	제2조 (기타 양친될 자의 자격	①항, ②항으로 분리 규정,
요건)	요건)	① 재외교포(외국 시민권자)에
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① 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	입양 시 양친 연령에 대한 특례
양친이 될 수 있는 자는 25세	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는 25	추가.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연	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와의	② 1항 단서를 2항으로 하여,
령차이가 60세 미만인 자로 하	연령차이가 <u>55세</u> 미만인 자로	변경.
되,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하되,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	
상 45세 미만인 자이어야 한다.	상 45세 미만인 자이어야 한다.	
다만,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	다만, 양친이 될 자에 대하여	
한 특례법 시행령」(이하"영"	법 제20조의 10 이 적용되는	
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경우에는 양친이 될 수 있는 자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는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자	
(이하 "가정조사기관"이라 한	와의 연령차이가 50세 미만인	
다)가 양친이 될 자의 가정환경	자로 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아	
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	<u>닌 자에 대한 요건은 적용하지</u>	
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u>아니한다.</u>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가	
	정조사기관"이라 한다.)가 양친	
	이 될 자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	
	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입양특례법 개정안의 발의에 대한 설명"에 대한 토론

김 영 복 동방사회복지회 사무총장

박 미 정 대원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박 복 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박소 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토론

김영복 동방사회복지회 사무총장

I. 들어가며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가장 좋은 대안은 아동의 가정 보호이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안정된 환경과 양육자가 반드시 필요하다. 입양은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마련해주는 제도이지만, 국가와 국민은 아동의 입양 전과 후 모든 일생과정에서 입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하며 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

지금까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9차례 개정되었고 이와 더불어 국내입양 활성화와 우선추진제, 국내입양부모의 연령 완화, 경제적 지원 등 아동의 국내 보호를 위한 노력은 현재까지도 계속되어 왔다. 그리고 헤이그협약 비준을 고려한 중앙입양정보원의 설립은 지금까지의 입양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이런 점에서 이번입양 특례법 개정안은 상당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허남순 교수의 입양특례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내용은 입양아동의 권익 보호와 입양 부모의 조건 강화, 사후관리 서비스 강화 등에서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추후 입양 서 비스의 질적 향상을 크게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하지만 실제로 입양기관에서의 업무 와 현실적인 조화를 이루어 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추후 업무에 혼선이 야기될 부분 이 예상되기에 개정안 내용에 의견을 첨부하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현행 특례법 상 특히 보완수정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이 궁극적으로 아동 최우선의 이익과 복지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을 기대하며 토론에 임하고자 한다.

Ⅱ. 현행법 및 개정안에 대한 의견

1. 개정안 법제5조(양친될 자격등), 시행규칙 제2조(기타 양친될 자의 자격요건)

- 1.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3.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 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 4.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 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을 것
- 5. 아동에 대한 학대 및 폭력 등의 범죄경력이 없을 것

제5조에 명시되어 있는 양친될 자격 요건 중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양자를 부양함에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양부모의 자격 기준이 모호하여 실제로 자격 요건에 미달하는 양부모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는 현실이다.

양부모의 '정신과 질환'이 없을 것에 대한 내용도 명시되어야 한다. 2009년 아동·청소년 사업안내에 의하면 "정신과적 진료를 장기간 받은 경력 또는 성폭력, 아동학대 전력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하였으나 정신과적 진료 기간의 기준과 치료병명의 범위 등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또한 개정안에 첨부된 "아동에 대한 학대 및 폭력 등의 범죄경력이 없을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입양부모의 질 향상과 아동의 복리를 위해 양친될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아동이 입양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부모의 자격조건을 현 실화 할 수 있는 기본선이 세부 지침에서 더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 개정안: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기타 양친될 자의 자격요건) 해외동포의 양부모자격조건 중 연령 제한에 있어서는 주제발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 다만 부모와 아동과의 연령차를 55세로 조정하려는 것과 함께 국내입양 양부모 자격조건에서의 나이차이도 아동복지차원에서 현실성 있게 60세가 아닌 55세로 하향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개정안 제6조(입양의 동의)

④ 부모의 입양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u>아동의 출산 후 72시간이 지난 후</u> 동의를 얻어야하고, 입양성립은 부모의 동의 후 30일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 조항은 입양 숙려기간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친부모의 아동 입양에 대한 신중을 기하자는 의미 외에 아동이 원가정에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의지도 담겨있다. 그러나 아동의 양육 결정과 입양 동의는 친부모의 의사에 따르는 사항이라는 점도 간과 해서는 안된다.

2009년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6월 18일-19일) 분임토의(친부모의 입양동 의를 위한 숙려기간 제도에 대하여)에서도 논의된 바와 같이, 요보호아동의 30% 정도가 미숙아, 저체중아, 장애아동 등 출생 직후 긴급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아동들임에도 불구하고 친모가 아동을 보호하는 72시간 동안에는 이와 같은 아동에 대한 긴급의료상황에 대처하기 어렵고, 아동은 적절한 시기에 의료적 치료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근래에 친부모는 임신 중반기부터 미혼모자 시설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아동의 장래에 대한 상담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대한 친부모의 자기결정권도 존중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아동이 입양되기 전까지는 친부모가 원하면 아동을 언제든지 귀가조치 가능하며, 출산 후 친부모는 아동과 연락을 원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입양아동은 건강검진이 완료되면 국내입양이 되고 있다. 개정안 제6조가실행될 경우 친부모의 사회적 낙인, 아동 유기와 낙태 등의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높기 때문에 숙려기간제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입양동의에 따른 아동보호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또한 부모에게도 입양의 신중을 기하기 위한 시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입양삼자(아동, 친부모, 입양부모)의 복리를 위해서는 "입양동의는 친부모가 입양에 동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30일이 경과한 때에는 입양동의의 취소를 요청할 수 없다."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미혼모의 동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동의가 아동의 출생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3. 개정안 제10조(중앙입양정보원의 설립)

① 요보호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 후 가정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입양정보원(이하 "정보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아동의 권익을 위하여 헤이그 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제적인 협조업무를 담당할 기구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나 그 기구의 기능과 업무분담에 있어서는 각 협약 당사국의 상황에 따라 서로 상이하다 하겠다.

요보호 아동의 입양활성화와 사후관리사업 등을 수행할 정보원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DB 구축은 그 범위와 내용에 따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다.

현행법 제12조(입양기관의 의무)

- ⑤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성립 후 6월까지 양친과 양자의 상호적응상태에 대하여 보건복지 가족부령이 정하는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로 입양되는 자의 사후관리는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할 때까지로 한다.
- ⑥ 입양기관의 장은 국외로 입양된 자를 위하여 입양된 자가 그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 후에도 모국방문사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조(모국방문사업등)에 의하면,

법 제12조제6항에서 "모국방문사업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모국방문사업, 2. 모국어연수사업, 3. 모국에 관한 자료지원사업, 4. 기타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양아동의 사후관리사업

개정안 제12조(입양기관의 의무)

⑤ 입양기관의 장은 정보원의 입양인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u>입양아동과 가족에</u> 관한 DB정보를 정보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입양아동의 출생정보 접근권)

- ① 입양아동은 만19세 이후 정보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친생부모에 관한 정보 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입양아동이 만19세 미만인 경우에도 친생부모가 정보공개에 동의하였고, 양부모와 아동이 공동으로 정보원 또는 입양기관에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친생부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4_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공청회

위와 같이 사후관리의 중요성을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내용은 정보원과 입양기관의 업무 구분에 있어 상당히 많은 혼선을 야기할 수 있는 조항이다. 입양의 사후관리가 중요함에는 어떤 이의도 없지만 이렇게 중요한 사후관리에 있어서 정보원과 입양기관의 데이터 공유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실제적인 사후관리가 어디에서 행하여지는가의 문제이다. 정보원이 아동과 가족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입양 당시의 서류와내용, 사진, 편지 등 이 모든 내용은 입양당시부터 이들이 성인이 되어 모국을 방문하고있는 현재까지, 이들의 살아있는 역사는 실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수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다. 실제로 입양인이 알고자 하는 모든 자료는 입양 기관이 보관하고 있고 입양인과 함께 출생지와 병원을 방문하고 친가족의 만남을 주선하며 모국방문사업을 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도 입양기관의 사회사업가들의 노력에 의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있다.

입양인이 원하는, 그리고 모국이 이들을 위해 책임지고 당연히 해야만 하는 위와 같이 중요한 서비스가 정보원과 입양기관의 업무 중첩으로 인해 사후관리 책임 소재가 모호해 지고, 일관된 서비스가 역행하여 이로 인해 입양인과 가족들이 혼선을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국가의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현재의 사후관리 서비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데이터구축을 위한 막대한 예산 투입이 진정 사후관리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지, DB의 제공이 입양인이 정말 알기원하는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사후관리 서비스의 질과 업무의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실제 사후관리를 행하고 있는 입양기관에게 전문적인 인력을 더 배치하여 한층 더 신속하고 질 높은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과 정보원과 입양기관의 업무를 명확히 구분하여 이에 따라 DB제공의 기준을 전면 검토해야 할 것이다.

4. 개정안 제12조(입양기관의 의무)

- ②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 의뢰된 아동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 내에서 입양가능한 부모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기간 내에 국내에서 입양가능한 부모를 찾지 못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국외입양 을 하도록 한다.
- ③ 제2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내입양이 되지 않을 경우 국가는 아동의 이익을 위하여 당해 아동에 대하여 <u>필요한 조정</u>을 할 수 있으며, 입양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아동에 대하여 '필요한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시되어야 한다. 상기 개정안 제12조 ③항에서 "입양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 다"를 "입양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표기되어야 한다.

5. 개정안 제22조의2(입양아동의 출생정보 접근권)

- ① 입양아동은 만19세 이후 정보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친생부모에 관한 정보 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양기관은 입양인이 신청한 정보를 열람 또는 등본을 교부하여 야 한다. 다만, 입양 당시 친생부모 중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한 경우 또는 정보공개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자의 정보는 의료적 필요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이에 대한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 ③ 입양아동이 만19세 미만인 경우에도 친생부모가 정보공개에 동의하였고, 양부모와 아동이 공동으로 정보원 또는 입양기관에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친생부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등본을 교부받은 입양아동이 사전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친생부모에게 연락하거나 거주지로 찾아가게 되는 경우 사생활을 침해 할 수 있으며, 입양당시 친생부모가사후 정보공개에 동의(또는 미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세월이 흐르면서 상황에 따라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보공개 전에 친생부모에게 그 의사를 다시 하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양부모가 입양할시 자신들의 정보가 입양을

진행한 기관외의 중앙입양정보원에도 제공됨을 알릴 의무와 어떠한 상황에서 그 정보가 열람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공개입양가정이 증가하면서 아동이 어릴 때부터 입양 사실을 인지하고 성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학령기에 접어들면 친부모를 만나고 싶다고 스스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위 조항에 의하면 만약 7-8세의 아동이 스스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입양 삼자가 동의하면 친생부모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해석이 된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는 논란의 소지가 많다.

따라서 제22조의2③항에 입양 삼자가 동의할 경우 입양아동의 연령을 만 19세 미만이라고 규정하기 보다는 입양아동 연령의 하한선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6. 개정안 제28조(과태료)

개정안에 알 수 있듯이, 현재 모든 법 조항은 토론 중에 있는 시점이며 이 개정안이어느 때보다 의미가 크기에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할 이유도 분명히었다. 그러나 정보원과 입양기관의 업무조차 구분되어 있지 않고, 입양기관이 정보원에제공해야할 정보의 내용과 기준도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안에 제28조제1호, 제28조제2호,제3호③항,④항,⑤항을 명시하는 것은 마치 입양기관이 정보원에 협조와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해석이 된다.

국가에서 중앙입양정보원을 설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입양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 계를 구축하여 아동의 복리를 실현하자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은 상호 협력체 계를 구축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조항이다.

따라서 입양기관의 처벌규정이 필요한 경우가 발행할 시 행정조치권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양기관에 지도 감독과 행정조치로만으로도 업무 의 조정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 조항에 대한 구체적은 내용은 계속적인 토의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7. 개정안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명시하였는데, 위에서 언급한 사후관리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보원과 입양기관의 업무 구분을 먼저 명확히 하 고 그에 따른 데이터 제공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 그리고 실제로 데이터가 구축이 되고 사후관리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는 시기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입양특례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토론

박미정 대원대학교 사회복지과 교수

입양서비스는 '입양아동 이익이 최우선'이라는 전제가 근간이 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입양특례법')은 그 동안 수차례 개정되어왔고, 이 공청회 또한 같은 맥락에 속한다고 본다. 현대적인 의미의 입양에 있어 한국의 입양역사를 한국전쟁 이후부터라고 한다면 반세기의 입양 역사만큼이나 오랫동안 입양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계시는 허 남순 교수님의 입양특례법 개정안발의 연구논문에 대한 토론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다.

오늘 토론할 대부분의 개정 법안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입양실천현장에서 성인이 된 입양인들에 의해, 혹은 양부모, 친부모들로 부터 그리고 입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양기 관 및 관련 유관단체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뜨거운 이슈들로서 한국의 입양 문화 선진화를 이루는데 초석이 되는 사안들이다. 그러므로 오늘의 공청회는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자리임을 인지하면서 토론에 임하고자 한다.

새롭게 신설되는 개정 법안들-입양가정조사서, 입양부모 자격조건, 입양대상 아동의 요건, 중앙국가기관, 사후관리 등-은 입양아동의 인권 신장과 복지 증진에 영향을 미치 는 중요한 사항들로 대체로 동의한다. 그러나 법 집행에 앞서 입양숙려제도, 뿌리찾기 와 관련된 법안들, 그리고 중앙입양정보원 등에 관한 내용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자 한다.

□ 입양특례법상의 연령표기

연령표기는 한국식의 나이가 아닌 '만'나이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국식 나이 표기와 '만' 나이가 혼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 예1) 청소년과 성인을 구분하는 연령개정에 대한 법안(제2조 제2호 개정). -"18세"를 "19세"로 한다
- 예2) 양자로 될 자의 동의 (제6조 제1항)
 - "15세"를 "13세"로
- 예3) 입양아동의 출생정보 접근권 ①입양아동은 "만19세" 이후(제22조의 2), ③입양아 동이 "만19세" 미만인 경우....

아울러, 입양특례법 신·구조문 대비표에서는(21p) 입양아동의 정보접근 연령을 "만 19세"로 표기되었으나 허 교수님의 발표문에서는 '만18세'로 되어있어 입양아동의 정보접근권에 대한 명확한 연령 규정이 요구된다.

□ 아동 본인 입양동의 연령 및 입양숙려제도

입양아동의 입양동의 연령을 현행 15세에서 13세로 하향 조정하는 것은 아동의 의사가 학대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는 출산모인 경우, 아동 출산 후 72시간 후에 이루어지고, 입양 알선도 입양 동의 후 30일이 경과한 후에 시작한다는 입양숙려제의 도입은 시기적절한 결정으로 친모에게 다시한번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바람직하다. 하지만 모든 미혼모가 미혼모숙소에서 보호를 받고 있지는 않는다. 특히, 나이어린 출산미혼모로서 미혼모숙소에서 보호받고 있지 않고 개인적으로 분만을 하는 경우(약 30% 해당, 국내입양실무자 면당), 특히 입양사실을 주위에 알리지 않고 스스로 처리해야만 하는 나이어린 미혼모인 경우에는 출산비용, 미숙아인 경우 추가될 수 있는 의료비(인큐베이터, 위급한 의료적인 행위, 등) 등으로 신생아를 유기할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입양숙려제도는 이러한 취약한 미혼모를 위해서 출산 후 3일 동안 심리적, 정서적,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시스템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미혼모가 심리적인 안정을 얻어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이러한 미혼모들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준비되어있는지 궁금하다. 또한 입양 동의 후 30일 이내에 친모가 아동양육 의사를 밝혀 입양기관으로부터 아동을 돌려받을 경우, 그 기간 동안 발생된 아동양육비, 인건비, 기타 부대비용 등 금전적인 추가 부담금 없이 친모에게 아동을 돌려주는 것인지? 숙려기간(33일)제도 시행에 앞서 친인척 및 이웃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나이어린 취약한 미혼모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 출생에 관한 정보의 접근권

개정 법안에서 입양아동이 만19세 이상이 되면 친생부모에 관한 정보의 열람 또는 등본의 교부를 허용하나(제22조의 2 ①), 입양당시 친생 부모의 정보공개 의사표시에 따라 입양기관은 입양인이 신청한 정보를 열람 또는 등본을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2조의 2 ②).입양인의 알권리를 법으로 인정한 점은 본 개정 법안이 입양문화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바 있으나, 현실적인 면에서는 현재 입양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입양사후서비스와 큰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입양서비스는 아동의 이익이 최우 선되어야 하고 아동중심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전제 하에 친생부모가 정 보공개를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 교수님께서 제언하신대로(10p)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아울러, '입양 당 시' 라고 규정하는 것 보다는 '친생부모가 정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로 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왜냐하면, 입양 후 친생부모들의 입장과 상황이 달 라질 수 있고 친부모찾기서비스는 시간이 오래 경과한 후에 발생되기 때문이다. 친생부 모에 대한 정보 열람의 범위-친부모의 신상정보(주민등록 번호, 거주지 주소, 연락처), 친부모와의 전문 상담기록, 양친가정조사서, 입양사후배치보고서 등)에 관한 명확한 기 준은 물론, 등본의 교부 또한 어떠한 서류들에 관한 것인지 입양기관 간 통일되고 명확 한 기준 하에 표준화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 중앙입양정보원과 입양기관의 기능

입양기관의 임무(제12조 ⑤)에서 입양기관의 장은 정보원의 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하여 입양아동과 가족에 대한 DB정보를 정보원에 주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의 범위, 내용, 개인정보입력 시점(입양초창기 시점부터인지, 개정안(2009년)시행 시점부터인지), 그리고 친부모찾기 기능에 대한 입양기관과 중앙입양정보원의 역할 분담에 대한 분명한 범주가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예를 들면, 입양배경이미비한 입양인과 더 이상 입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입양기관들에 대한 뿌리찾기는중앙입양정보원에서 하고, 그 외는 현존해있는 입양기관에서 한다든지, 명확한 기준이필요하다. 왜냐하면, 제22조의2(입양아동의 출생정보 접근권)에서 입양아동은 정보원 또는 입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친생부모에 관하여 정보를 열람(20p)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중복신청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 입양기관의 후견인 직무 및 사회복지서비스

입양기관의 후견인 직무에 관한 개정 법안은(제13조) "입양기관의 장은..... 양부모가 입양될 자를 인수할 때까지"로 되어있으나 "양부모가 입양될 자를 출생신고 할 때까지"로 수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입양아동은 출생신고를 통하여 자신의 이름이 양부모의 자녀로 호적에 올라간 경우에 한하여 자녀로서의 권리를 인정받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서비스(제22조), 관계기관의 협조(제23조)에서도 "친가족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개인정보열람 등 친가족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로 되어있는 것을 "……… 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입양부모의 아동학대, 성학대 등 범죄기록을 열람, 개인정보열람 등………."으로 '범죄기록열람'이라는 문구가 추가되어 양부모의 범죄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아울러, 제23조(양육보조금의 지급) 장애아동을 위한 양육수당 및 의료비등 기타 양육보조금은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러한 개정 법안들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가 무엇보다 도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입양특례법 개정안의 발의에 대한 설명"에 대한 토론문

박복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허남순 교수님의 "입법특례법 개정안의 발의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 교수님은 발제문에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입양특례법'이라함)이 입양대상 아동이나 입양가정의 복지향상을 위해 그동안 9차례나 개정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점에 왜 개정 논의를 할 수 밖에 없는지에 대하여 헤이그국제협약의 내용과 한국의 입양관련법의 내용을 비교 소개하시면서 문제점을 도출하시고, 제시된 해결방안을 모아 최종적으로 입양특례법 개정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는 입양의 절차적 요건으로 양친이 될 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여 입양가정의 가정상황을 조사하도록 하고, 범죄경력이 없을 것을 요건으로 추가하고 있으며, 법원으로부터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로서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된 아동은 후견인의 입양동의로써 부모의 입양동의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여 입양동의 절차를 간소화 하고, 아동본인의 입양동의 연령을 15세에서 13세로 하향 조정하여 입양 시 본인의 의사가 확대 반영될 수 있게 하였으며, 입양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부모의 입양동의는 아동의 출산 후 적어도 72시간이 지난 후 이루어져야 하고, 입양동의 후 30일이 경과한 후 입양 알선을 시작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요보호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사후관리 사업 등을 수행하는 중앙입양정보원을 설립하고 국가가 운영경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친생부모의 사생활 유지 권리를 고려하여 친생부모 등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 만18세 이후 입양아동이본인 친생부모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교수님이 제안하신 대부분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고 지지 의견을 보냅니다. 다만 발제문에서 지적하신 사항 중 궁금한 몇 가지 사항을 질의하며 토론에 갈음하고자 합 니다.

첫째,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복지정책을 통합하기 위하여 「아동복지

법」과「청소년복지지원법」의 내용을 통합하여「아동·청소년복지법」으로 하려는 개정의 움직임 속에,「아동·청소년복지법」이 대상 아동을 19세로 상향하고 있는 것에 따라입양특례법상의 아동도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발제문에는 안 제2조제2호로 되어 있으나 제2조제1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이와 맞물려서 입양아동의 출생정보 접근권 도입 신설을 제안(안 제22조의2)하시면서, 출생정보접근가능 연령을 만 18세 이후로 제안하고 있는데, 법에서 아동을 19세 미만까지로 상향하면서 출생정보접근권은 만 18세 이후로 차등을 두신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친양자 입양의 경우 출생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연령은 친양자가 성년이 되어 신청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제14조제2항). 그리고 우리 민법은 성년의 연령을 만 20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민법 상의 성년 연령이 만 19세로 조정될 경우를 가정하고(개정 움직임 반영), 다른 법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아동의 연령은 만 19세 미만까지로 하고성년에 달한 만 19세 이후 출생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3면에서 외국 국적을 가진 해외동포가 입양을 하는 경우 외국인과 동일한 자격 요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문제를 지적하시면서, 향후 이를 국내입양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있는 예외규정을 둘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제협약이 국적이 아닌 입양부모와 아동이 거주하는 거소가 다른 국가에 속하는 경우를 국제입양으로 보고 있는데, 이러한 국제협약에 예외가 될 수 있는 사항을 특약으로까지 해서 인정해야 되는 근거로 한국 혈통과 문화는 빈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 입양은 이미 한국 혈통과 문화의 단절을 의미하며, 국내를 벗어나 국제 입양이 되는 경우에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양부모로 될 자격 요건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허교수님은 발제문 12면에서 아동복지법이나 민법의 개정 없이도 입양특례법을 개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정 내용을 국한하여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민법을 전공한 학자로서 입양특례법과 민법의 관계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입양가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아동을 입양 보내야 하는데 민법에 의한 입양은 입양부모의 적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친권자와 입양할 개인의 동의만으로도 입양 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아동을 보호하는데 매우 취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민 법에 의한 입양이 당사자 간의 동의와 신고만으로 입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하여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보다는 민법에의한 입양이 절대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며, 통계상으로 잡히지 않고 있는 친생자 출생신고로 한 입양의 수까지 고려한다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짐작됩니다.

가를 위한 입양, 부모를 위한 입양에서 자녀를 위한 입양으로 큰 흐름이 변화해 왔고, 입양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아동의 복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의 민법과 입양특례법의 이원화된 절차는 하나로 통합되어야 하며, 단순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입양부모의 부모로서의 적격성 심사와 법원의 허가(선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요보호아동의 입양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일반 아동으로 확대 적용하여 미성년 입양은 하나의 법에 의하여 규율되도록 통합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리라 생각합니다.

토론문

박소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I. 들어가는 말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하 '입양특례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자의 보호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미숙하여 성인의 보호를 받으며 성장해야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아동복지의 핵심은 '가정 보호'이나 가족이 아동을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의 기능은 대체되거나 보충되어야 하고 친부모가 영구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입양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여겨져 왔다. 입양이란 혈연관계가 아닌 법적 관계로 맺어진 부모자녀관계로서 입양부모는 아동을 보호하고 심리적 안정과 안전한 양육환경을 제공할 책임을 갖게 된다.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 비차별, 생명·생존 및 발전에 관한 권리, 아동의 견해 존중이라는 4가지 기본원칙을 기본이념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입양대상인 요보호아동의 권리도 이에 준하여 존중되어야 하며 입양의 전체 과정 (process)에서 이러한 원칙들이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즉, 입양의 요건 및 절차 - 입양 후 사후 관리-입양의 취소나 무효 및 파양 등의 각과정에서 적법절차가 보장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결과로서 요보호아동의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입양기관의 충실한 역할과 의무 수행이 요구되며, 입양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입양특례법은 제정 이후 여러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입양대상 아동이나 입양가정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을 거듭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개정에 대한

욕구가 많았었는데, 발제자가 제시한 입양특례법 개정안은 그동안 제기되어왔던 법개 정 의견들을 상당부분 수용하고 있다.

개정안을 검토해보면 입양의 절차적 요건과 관련하여 입양가정조사서 및 입양부모 자격요건을 강화하며, 입양대상아동의 요건 및 동의절차와 관련하여 아동 본인의 입양 동의 연령을 하향조정하고 입양숙려제를 도입하며, 중앙국가기관으로서 중앙입양정보 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아동의 사후관리와 관련하여 입양아동의 출생정보접근권을 도 입하고 양육수당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발제자는 '입양되는 모든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관점에 기초하여 헤이그협약의 기준에 맞추어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하였음을 피력하고 있다. 헤이그국제입양협약이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한 보호조치를 정하고 국제협력체제를 확보해 국제입양이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하며 입양의 효력을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것으로 국제입양 뿐만 아니라 국내입양에서도 마땅히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에 대체로 동의하며, 다만 아래의 몇가지 점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Ⅱ.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1) 가정조사보고서 작성의 실효성 담보

개정안은 양부모가 될 자에게 아동 학대 및 폭력 등의 범죄경력이 없을 것을 요하는 자격 요건을 추가하고(개정안 제5조 1항 5호) 입양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조사를 수 행하도록 하고 있는데(개정안 제5조 3항), 이는 입양아동의 보호에 충실을 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이를 단순히 선언적인 규정이 아니라 가정조사의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입양기관에 실질적인 조사권한이 인정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개정안에서 가정조사보고 작성을 입양기관의 의무로 제12조 4항에 규정하고 도 제12조에 규정되어 있는 다른 의무조항 위반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가정조사 보고 위반의 경우에는 동법에 의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여 그 실효성이 의문스럽다. 개정안 제12조 4항 위반시에도 개정안 제28조에서 규정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아동 본인의 입양동의 연령

개정안에서는 아동 본인의 입양동의 연령을 '15세 이상'에서 '13세 이상'으로 낮추었다. 이는 입양대상인 아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할 필요가 있고 그 가능한 최저 나이를 몇세로 할 것인가의 문제로, 아동의 발달상태를 고려하여 12세 혹은 13세라는 의견들이 있어온 것으로 안다.

개정안은 이에 대하여 13세 이상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아동의 성숙이 빨라지고 신체적·정신적으로 매우 빠른 성장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아동들의 발달상태를 고려할 때현실적으로 12세 이상이면 충분히 본인의 의사를 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고려된다. 아동권리협약에서도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12세 이상 아동의의견을 듣도록 하고, 나아가 12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도 적절한 방식으로 아동의 의사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일단 입양특례법에 아동 자신의 의사를 듣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럽고 당연한 것이며, 가능한 최저연령을 낮추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고려되어 12세 이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단순히 최저연령 을 규정하는 데에 그치지 말고, 그 나이에 달하지 못한 아동의 경우에도 적절한 방식으 로 아동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하여 아동의 의사를 확대반영할 수 있 기를 바라다.

(3) 입양숙려제 보완

입양기관에 입양의뢰를 하는 친부모 중 비혼부모의 친권보호와 입양동의서에 대하여 입양특례법은 부모의 입양동의를 언제 받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법에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상담창구를 통하여 보면 비혼모가 입양기관을 통 한 입양을 하면서 아이를 출산하기 전 입양동의를 하였고 추후 입양의사철회가 받아들 여지지 않았다는 상담사례가 간혹 있었다.

비혼모는 비혼모에 대한 사회적 시선, 아이 양육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 아이 아빠와의 불확실한 관계, 부모에 대한 죄책감 등의 스트레스로 불안한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된다. 따라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불안한 상태에 있는 비혼모에게는 입양의사를 충분히 숙고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며 발제자가 제안한 바와 같이(개정안 제6조 4항) '아동의 출산 후 72시간이 지난 후 부모의 입양동의를 받아야 하고, 입양성립은 부모의

동의 후 30일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지도록'하는 입양숙려제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비혼모들의 친권을 존중하고 입양에 대한 숙고 기간을 충분히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서 더 나아가 친모가 30일 이전에 이의신청을 하고 숙려기간을 더 연장할 것을 요청하면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포함시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이 결국은 아동의 최선의 복리를 고려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발제자 역시 지난 5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개최한 입양관련 심포지엄에서 이러한 취지의 토론을 한 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아서 조금아쉬운 부분이다.

(4) 친양자 입양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요보호아동이며, 이 법이 요보호아동이 양친의 가정에서 친생자와 다름없이 양육을 받으며 성장하는 것을 기본취지로 하고 있다고 본다면,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친양자관계가 성립하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발제자는 발제문에서 현재 친양자 입양시 이미 입양동의서를 제출한 동의권자가 소재불명으로 법원의 출석요구에 연락이 없는 경우 행방불명으로 처리하여 친양자로 가족관계를 등록하는 것을 허가하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점에서 입양부모들이 친양자 입양을 기피한다고 하면서 이 경우 보호시설 또는 입양기관의 장이 소명하면 친생부모의 법원 출석에 의한 확인없이 이미 제출한 입양동의서로 법원이 직권으로 입양의사를 확인하고 친양자 입양을 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토론자 역시 발제자의 의견에 동의한다. 그리고 입법적으로는 민법상 친양자 입양의 요건과관련하여 '친생부모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소재불명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시키면 간이하게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발제자는 입양특례법상 친양자 도입을 개정안의 내용에 포함시키지는 않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입양을 하는 사람들은 입양신고 대신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친양자제도가 도입되기 전까지 입양특례법상 입양의 효과는 단지 아동의 성과 본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할 수 있을 뿐 호적상으로는 친자가 아니라 양자로 기재될 수 밖에 없었던 법이 입양사실을 드러내기 싫어하는 양부모들에게 위법행위를 조장해왔던 것이다.

그러나, 2008년 1월 1일부터 도입된 민법상 친양자제도는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에는 양자도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친생자관계로 기록되어 입양사실이 드러나지 않게 되었으므로 입양아동과 가정의 복리를 도모할 수 있다는점에서 입양특례법상 입양의 경우에 친양자 관계가 성립하도록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다. 또한 입양신고를 하는 대신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를 하는 관행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입양의 양성화라는 기본정책에도 반할 뿐 아니라 건전한 입양풍토를 조성하는 데도 장애가 되므로 이를 개선할 방법이 반드시 모색되어야 한다.

다만 친양자 입양은 양부모의 입장에서 절차적 번거로움이라는 부담감을 줄 수 있다. 입양을 원하는 사람들은 출생신고처럼 입양과 동시에 입양신고를 통하여 입양사실확인 서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등록될 수 있는 간이한 절차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최근 각국의 법제는 입양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요구하는 추세로, 그 러한 절차를 밟아야만 입양이 양자가 될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가를 제대로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하여 절차상 간이하면서도 입양아동의 복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원의 심사를 보장하도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 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입양기관에서 가정환경 조사 등의 입양절차를 거친 당사자에 대해서는 친양자 입양의 허가심판을 받는 대신에 보다 간단한 절차-즉, 가정법원이 확인기일을 정하여 양친이 될 자와 양자될 아동의 법정대리인을 출석하게 하고 입양의 동기 및 양육환경 등을 확인하는-로 친양자입양확인증서를 발급하면, 당사자가 이를 첨부하여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는 것으로 친양자 입양이 성립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입양아동의 성명과 등록기준지, 친생부모의 정보가 기재된 입양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 원본은 법원에서 보관하고 입양아에게는 입양부모의 성과 본을 딴 출생증명서를 법원에서 발급하여 입양부모는 이 출생증명서를 가지고 친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공시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

(5) 입양의 취소 및 파양시 아동보호

입양특례법에는 입양의 무효와 취소 및 파양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법을 적용하고 있다. 파양시 입양승낙자인 법정대리인이 협의 및 재판청구권을 가지지만, 이들은 입양 이 완성되면 양자에 대한 권한이 소멸된 자들로 법적 자격문제의 소지가 있다. 협의파 양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라 신고하면 법률위반 여부만을 심사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파양의 영향을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입양특례법에 의한 대부분의 입양이 친자입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파양절차 없이 법원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를 하여 판결을 받아 사실상 파양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입양특례법에 파양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두어야할 것이고, 민법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요보호아동의 입양은 재판상 파양만을 인정하여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입양되는 아동의 친생부모의 상당수가 비혼모이고 이들은 자녀를 양육할 능력이 없어 입양을 선택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입양취소 및 파양으로 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친권을 되돌리고 성을 되돌린다는 것은 아동복지적 측면에서 매우 위험한 일이다.

입양취소 및 파양시 친생부모가 친생자를 다시 양육할 수 있는지를 반드시 심사하여 야 하고, 친생부모가 다시 양육할 수 없는 경우에는 후견인을 정하여 후견인이 아동의 보호를 책임질 수 있을 때 이를 허가해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양자는 그동안 사회생활과 법률적 관계에서 양부모의 성과 본을 이용하여 왔기 때문에 입양특례법 규정대로 입양전 성과 본을 따르게 한다면, 사회생활의 기반을 잃을 수 있고 본인의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른 양자가 입양이 취소되었거나 파양된 경우에는 양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본래의 성과 양부모의 성 중 자유의사에 의해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Ⅲ. 맺는 말

발제문에서 제시된 입양특례법 개정안의 내용들은 현 시점에서 최소한 그리고 시급히 정비되어야 할 주요한 사항들이 포함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입양특례법상 친양자 입양의 도입이나 입양 취소, 파양시의 아동 보호 문제도 중요한 법개정 과제라는 점에서이번 법개정 작업에서 함께 다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논의되기 바란다.

우리나라는 통계상으로는 2007년 국내입양 건수가 해외입양을 앞질렀지만 지금도 많은 아동을 해외입양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1993년 헤이 그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된 국제입양협약의 미가입국이라는 사실은 우리 사회와 국가

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아동권리협약과 동일하게 헤이그협약은 우선적으로 아동이 출생가족과 출신국의 보호아래 머무를 수 있도록 각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서, 해외입양은 그것이 불가능한 때 아동에게 안정된 가정을 제공하는 최후의 수단임을 명시하고 있다. 우리 아동의 해외입양이 지속되고, 다문화가정의 증가추세속에서 우리가 외국 아동을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한 입양이 적법절차에 따르도록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가 빠른 시일 내에 헤이그국제입양협약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